

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

우135-757 강남구 삼성동 159-1 무역회관 1801 / Tel 6000-1840 / Fax 6000-1856
수입업무부 이사 조종화 부장 안상필 담당 최은정 E-mail: watw@kpta.or.kr

문서번호 약수협2-1365

시행일자 2013. 12. 19

수신 회원 및 비회원사
대표 귀하



참조

제목 「도로명주소법」 시행에 따른 화장품 등록(심사) 등 관리 요령 알림

1.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-7214(2013.12.17) 관련입니다.

2.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전행정부에 제정·공포한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「도로명주소법」이 '14.1.1.자부터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함에 따라,

3. 화장품의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 등과 관련한 소재지 정비 방안과 표시기재(포장재) 관리요령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알려온 바,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등록(심사)사항 및 표시기재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화장품 등록(심사)사항 및 제품 표시기재 관리요령 1부. 끝.

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이 정 규



붙임자료는 우리협회 홈페이지(www.kpta.or.kr) 공문알림에서 DOWN 받으시기 바랍니다.

**- 「도로명주소법」 시행에 따른 -
화장품 등록(심사)사항 및 제품 표시기재 관리요령**

□ 화장품 업 등록사항 등 관리

가. 등록필증

- 관리요령 : 제조(판매)업자는 업 등록필증 뒷면의 「변경 및 처분 사항 등」란에 변경일자(2013.12.31)와 변경내용 기재 (별도 변경등록 신청 불필요)

< '등록필증' 이면기재 예시 >

변경 및 처분 사항 등	
연 월 일	내 용
2013.12.31.	' <u>소재지</u> '를 도로명으로 변경 (소재지 : 000 -> 000) (화장품정책과- 호, 2013.12. .)

* 도로명 주소로 기등록한 제조(판매)업자는 해당사항 없음

나.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

- 관리요령 : 제조업자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 뒷면의 「변경 및 처분사항」란에 변경일자 (2013.12.31)와 변경내용 기재(별도 변경신청 불필요)

< 증명서 이면기재 예시 >

변경 및 처분 사항	
연 월 일	내 용
2013.12.31.	' <u>소재지</u> '를 도로명으로 변경 (소재지 : 000 -> 000) (화장품정책과- 호, 2013.12. .)

* 도로명 주소로 증명서를 기발급받은 제조업자는 해당사항 없음

□ 심사 사항 관리

기능성화장품 결과통지서

- 관리요령 : 제조판매업자는 기능성화장품 (심사, 변경심사) 결과 통지서 앞면의 「소재지」란에 기존 기재된 소재지에 두줄 긋고, 제조판매업자 날인 후, 변경일자(2013.12.31)와 변경내용 기재(별도 변경심사 신청 불필요)

< '결과통지서' 기재 예시 >

	변경 전	변경 후
<u>소재지</u>	충북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643	충북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643 (제조판매업자 인)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(화장품정책과- 호, 2013.12. .)

□ 표시기재(포장재) 관리

- (변경등록일 이후 생산 품목) 도로명주소로 표시
 - 다만, 변경등록일('13. 12. 31.) 이전에 제작된 포장재의 경우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

□ 기타사항

- 각 업체에서는 식약처 화장품 전자민원창구(ezcos.mfds.go.kr)를 사전에 확인하여 도로명 주소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청 (업 등록) 및 평가원(기능성화장품 심사)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수정 요청 등 필요 조치를 취할 것

붙임. 소재지 변경조치 대상 현황

<소재지 변경조치 대상 현황>

연번	법령명	서식명
1	화장품법	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
2	화장품법	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
3	화장품법	기능성화장품 (심사, 변경심사) 결과통지서
4	화장품법	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